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 획 예 산 과 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전 화 : 2094-0470~5



제2187호 2016. 8. 11.

자 치 법 규

훈령 제19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업정보센터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1

공 고

공고 제2016-687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10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094-0474 / FAX: 2094-0479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랑구 훈령 제198호

서울특별시중랑구취업정보센터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중랑구취업정보센터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6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나 진 구 (인)

서울특별시중랑구취업정보센터설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직업안정법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중랑구”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하고, “취업정보센터”를 “일자리플러스센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취업종합정보센터”라 함은”을 ““일자리플러스센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담원”이라 함은”을 ““상담원”이란”으로,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업종합정보센터”를 “일자리플러스센터”로 한다.

- ① 일자리플러스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이하 “일자리플러스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업종합정보센터”를 “일자리플러스센터”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업종합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를 “일자리플러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동사무소, 기타”를 “동 주민센터, 그 밖의”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업종합정보센터”를 “일자리플러스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모사전송기”를 “팩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필기대, 공중전화 등”을 “필기대 등”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조직)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과 운영요원, 상담원을 둔다.

제8조(인력)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센터장 1명, 운영요원 1명, 상담원 2명 등 총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9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설치·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일자리플러스센터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 등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및 업무조정, 지휘감독, 그 밖의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업종합정보센터”를 “일자리플러스센터”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업종합정보센터”를 “일자리플러스센터”로 하고, “취업 정보방”을 “취업정보방”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업종합정보센터”를 “일자리플러스센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취업종합정보센터”를 “일자리플러스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중랑구취업정보센터설치 · 운영 규정</u>	<u>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 운영 규정</u>
제1조(목적) 이 규정은 <u>직업안정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의 구인 · 구직상담, 직업소개(취업알선), 고용정보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취업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직업안정법</u>」 제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 -----<u>일자리플러스센터</u>-----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u>취업종합정보센터</u>“라 함은 직업상담, 취업알선, 고용정보제공,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안정 기관을 말한다. 2. “<u>상담원</u>“ 이라 함은 직업소개 관련업무 유경험 공무원 및 <u>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u> 유자격 민간상담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u>일자리플러스센터</u>“란----- ----- -----. 2. “<u>상담원</u>“ 이란----- ----- 「<u>직업안정법 시행규칙</u>」 제19조에 따른----- -----.
제3조(명칭) ① <u>취업정보종합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중랑구취업종합정보센터 (이하 “<u>취업종합정보센터</u>“이라 한다)라 한다.</u> ② <u>취업종합정보센터</u>에는 불특정인이 쉽게 알아볼 수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현판을 제작하여 건물 또는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명칭) ① <u>일자리플러스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이하 “<u>일자리플러스센터</u>“라 한다)라 한다.</u> ② <u>일자리플러스센터</u> ----- ----- -----.

현행	개정안
제4조(기능) <u>취업종합정보센터</u>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4. (생략)	제4조(기능) <u>일자리플러스센터</u> ----- -----. 1.~4. (현행과 같음)
제5조(설치장소) <u>취업종합정보센터</u>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구청 청사내, 구민회관, 동사무소, 기타 공공장소 2. ~ 3. (생략)	제5조(설치장소) <u>일자리플러스센터</u>는 다음 각 호의----- -----. 1. ----- 동 주민센터, 그 밖의----- 2. ~ 3. (현행과 같음)
제6조(장비 및 공간배치) <u>취업종합정보센터</u>는 구인·구직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민원인 위주의 쾌적하고 안락한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공간을 배치하여 한다. 1. 취업상담실 : 상담창구는 칸막이를 하지 않은 개방형으로 하고, 고용전산망 운용컴퓨터, 프린터기, <u>모사전송기</u> 등의 장비 구비 2. ~ 3. (생략) 4. <u>기타</u> 설비 : 채용 알림판, 음료수대 <u>필기구</u> 및 <u>필기대</u>, <u>공중전화</u> 등 편의시설 설치	제6조(장비 및 공간배치) <u>일자리플러스센터</u>----- ----- -----배치하여야 --. 1. 취업상담실 : 상담창구는 칸막이를 하지 않은 개방형으로 하고, 고용전산망 운용컴퓨터, 프린터기, <u>팩스</u> 등의 장비 구비 2.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의</u> 설비 : 채용 알림판, 음료수대 <u>필기구</u> 및 <u>필기대</u> 등 편의시설 설치
제7조(조직) <u>취업종합정보센터</u>는 <u>취업종합정보센터</u>를 대표하는 원장과 실무책임을 맡은 운영실장, 상담원, 취업정보방 운영요원을 두며, 보조기관으로 “<u>취업종합정보센터운영협의회</u>”를 둔다.	제7조(조직) <u>일자리플러스센터</u>는 <u>일자리플러스센터</u>를 대표하는 센터장과 운영요원, 상담원을 둔다.

현행	개정안
제8조(인력) 취업종합정보센터는 원장 1인, 운영실장 1인, 상담원 3인, 취업정보방운영 1인 등 총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9조(취업종합정보센터원장) ① 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신망있고, 영향력 있는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비상근무보수 명예직으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취업종합정보센터에 대한 관심제고 및 제반 지원활동 기타 취업종합정보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대외활동 등의 역할을 한다. ④ 원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취업종합정보센터 운영실장) ① 취업종합정보센터 운영실장은 일반직 행정6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실장은 취업종합정보센터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등 취업종합정보센터는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및 업무조정, 지휘감독, 기타 취업종합정보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취업종합정보센터직원) ① 취업종합정보센터 직원은 취업상담실 상담원 3인 이상, 취업정보방 1인 이상으로 한다. ② 취업상담실 상담원은 취업 관련분야 근무 유경험 공무원과 유자격 민간인으로 취업정보방 운영요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유자격 민간 상담원은 자원봉사자 또는 공공근로사업자로 할 수 있다.	제8조(인력)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센터장 1명, 운영요원 1명, 상담원 2명 등 총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9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설치·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일자리플러스센터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 등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및 업무조정, 지휘감독, 그 밖의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제12조(취업종합정보센터 운영협의회) ① <u>효율적인 취업정보업무 수행을 위하여</u> <u>취업종합정보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u> ② <u>협의회 회장은 취업종합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으로,</u> <u>부위원장은 취업종합정보센터원장과 일반위원장과 일반위원중에서 선정한 1인 등 2인으로 하며</u> <u>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u> ③ <u>위원은 무료직업소개소, 종교단체 · 사업주 · 근로자단체 · 사회단체등의 대표자로 한다.</u> ④ <u>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u> 1. <u>취업종합정보센터 운영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u> 2. <u>지역주민 취업알선 증진에 관한 사항</u> 3. <u>지역 고용증대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u> ⑤ <u>협의회가 취업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u> ⑥ <u>협의회는 년2회(상.하반기)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에게는 관련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삭 제>

현행	개정안
제13조(취업상담실 운영) <u>취업종합정보센터</u>의 취업 상담실에서는 다음 <u>각호</u>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신청접수 2. 구인, 구직 상담 3. 취업정보 전산망 운영 4. <u>동사무소</u> 및 무료직업소개소의 구직, 구인 신청분 접수, 등록	제13조(취업상담실 운영) <u>일자리플러스센터</u>----- <u>각 호</u>의 -----. 1. ----- 2. ----- 3. ----- 4. <u>동 주민센터</u> -----
제14조(취업정보방 운영) <u>취업종합정보센터</u>의 <u>취업 정보방</u>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 3. (생략)	제14조(취업정보방 운영) <u>일자리플러스센터</u>--- <u>취업정보방</u> -----. 1~ 3. (현행과 같음)
제15조(채용알림판 등의 운영) <u>취업종합정보센터</u>의 채용알림판 등 게시판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을 참고하여 고용정보 전산망으로부터 다양한 구인·구직정보를 출력하여 게시함으로써 이용자가 최근의 고용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15조(채용알림판 등의 운영) <u>일자리플러스센터</u>----- -----. 1~ 2. (현행과 같음)
제16조(종합정보체계 구축) ① <u>취업종합정보센터</u>는 무료직업소개소에 접수된 구인·구직 신청 현황을 매일 입력하여 활용한다. ② <u>동사무소</u>에 취업접수창구에 접수된 구인·구직 접수분을 익일까지 입력하여 활용한다.	제16조(종합정보체계 구축) ① <u>일자리플러스센터</u>-----. ② <u>동 주민센터</u> -----.
제17조(다른 기관의 협력) ① 상담원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u>당해</u>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u>기타</u> 관련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다른 기관의 협력) ① 상담원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u>해당</u>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u>그 밖의</u> 관련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우리 구 ‘중랑구 취업정보센터’ 명칭을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와 명칭 통일을 위해 ‘중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변경하고, 개최실적이 저조한 협의회 규정 삭제 등 센터 운영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업정보센터 명칭 변경(제1조~제16조)

- 중랑구 취업정보센터 ⇒ 중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나. 조직 및 일자리플러스센터장 (제7조~제9조)

- 구성(센터장, 운영요원, 상담원) : 6명 ⇒ 4명
- 일자리플러스센터장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 ⇒ 주관부서의 팀장

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장 및 직원 규정 삭제(제10조~11조)

-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장(행정6급) 등 직원관련 규정 삭제

라. 취업정보센터 운영 협의회 규정 삭제(제12조)

- 운영되고 있지 않은 운영협의회 규정 삭제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16-687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2호(2009.8.13)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5호(2011.1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78호(2013.3.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9호(2013.5.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67호(2013.10.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3호(2014.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28호(2014.4.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1호(2014.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99호(2015.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5호(2015.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98호(2015.9.24)로 변경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다시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중랑구청 도시개발과로 소정의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8. 1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공람기간 : 2016. 8. 11. ~ 8. 26.
2.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신내동 662), 중랑구청 도시개발과
3. 공람내용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m ²)			지 정 목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상봉 재정비촉진 지구	중심지형	중랑구 망우동, 상봉동 일대	505,597.9	-	505,597.9	지역중심으로서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상업·유통·업무 등의 도시기능 증진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 기준연도 : 2015년
- 목표연도 : 2023년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도심 의존적 도시구조를 탈피하여 중량 생활권 및 동북1권의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충족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중심에 걸맞는 도시기능 회복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

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주요내용

- 상봉 6재정비촉진구역을 해제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 상봉 8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완료(2013.11.)에 따라 존치관리구역 전환
- 상봉 3·4존치정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
 - －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했던 2개 존치정비구역에 대하여 “약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 변경
-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등에 따른 연계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 기정 계획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 요소 정비, 시대·여건 변화상 반영
- 존치관리구역(특별계획구역 포함)의 혼재 및 난립에 따른 통폐합 및 재정비

마.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비율 (%)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505,597.9	－	505,597.9	100.0
개 발 용 지	소 계	304,707.9	증) 20,687.8	325,395.7	64.4
	상업복합	121,173.1	증) 18,838.4	140,011.5	27.7
	업무복합	58,548.0	－	58,548.0	11.6
	도심주거	64,243.7	증) 15,392.0	79,635.7	15.8
	상업·숙박	21,530.5	－	21,530.5	4.3
	상업·업무	16,575.0	감) 13,006.1	3,568.9	0.7
	대형판매	19,428.0	－	19,428.0	3.8
	종 교	2,872.7	감) 199.6	2,673.1	0.5
	유 치 원	336.9	감) 336.9	－	－
계 획 반 시 설	소 계	200,890.0	감) 20,687.9	180,202.2	35.6
	문화시설	1,304.3	감) 1,304.3	－	－
	사회복지시설	606.7	－	606.7	0.1
	공 원	28,586.5	감) 28,586.5	－	－
	광 장	2,714.4	감) 373.7	2,340.7	0.5
	공공공지	4,234.6	감) 2,075.6	2,159.0	0.4
	보행자전용도로	227.0	－	227.0	0.1
	철 도	15,375.3	－	15,375.3	3.0
	도 로	146,272.2	증) 11,652.3	157,924.2	31.2
	여객자동차터미널	1,569.0	－	1,569.0	0.3

2)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 6,633호 / 17,511인

주택유형		주택 수(호)			인구 수(인)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506	증) 127	6,633	17,175	증) 336	17,511	—
촉진 구역	소 계	3,690	감) 2,332	1,358	9,741	감) 6,156	3,585	세대당 2.64인
	60㎡이하	847	감) 564	283	2,236	감) 1,489	747	
	60~85㎡이하	1,761	감) 832	929	4,649	감) 2,196	2,453	
	85㎡초과	1,082	감) 936	146	2,856	감) 2,471	385	
존치관리구역		2,816	증) 2,459	5,275	7,434	증) 6,492	13,926	기존세대 반영

○ 구역별 수용계획(기정)

구 분		기존세대수	계획세대수			인구수	주거비율 (%)
			소계	일반세대수	임대주택		
촉진구역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1,868	1,835	1,527	308	4,844	74.0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349	511	423	88	1,349	59.2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2	497	473	24	1,312	45.9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	847	776	71	2,236	49.0
존치정비 구역	상봉3존치정비구역	50	—	—	—	—	—
	상봉4존치정비구역	44	—	—	—	—	—
존치관리구역		2,816	2,816	2,816	—	7,434	—
합 계		5,129	6,506	6,015	491	17,175	—

○ 구역별 수용계획(변경)

구 분		기 존 세대수	계획 세대수			인구수	주거비율 (%)
			소계	일반 세대수	임대주택		
촉진 구역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349	511	423	88	1,349	59.2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	847	776	71	2,236	49.0
존치관리구역		4,780	5,275	5,251	24	13,926	
합 계		5,129	6,633	6,450	183	17,511	

※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상봉 3·4존치정비구역은 구역해체에 따라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고 현황세대수 반영

※ 상봉8재정비촉진구역은 2013.11월 사업 완료된 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3)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위 치	전용면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148.6		8,412.8	
문화 복지 시설 (공공)	상봉커뮤니티센터	축진6구역	2,700.0	감) 2,700.0	—	축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Culture Complex	축진7구역	4,000.0	감) 4,000.0	—	시설확지(면적 1,304.3m ²) 및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 폐지
	지역커뮤니티시설	축진7구역	—	증) 5,964.2	5,964.2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공청사 용도의 건축물 시설 기부채납(복합건축물의 대지지분 477.1m ² 별도)
	소극장/갤러리	축진8구역	2,448.6	—	2,448.6	조성(기부채납) 완료
	주민커뮤니티시설	축진9구역	—	증) 1,800.0	1,800.0	여객터미널과 중복결정

※ 기부채납 대지면적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 대비 제공시설면적을 계산하여 대지지분으로 환산 산정

※ 건축물로 시설 기부채납 시 공공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인지성이 높은 저층부(지하1층~지상2층)를 포함하여 수직방향으로 연속되는 공간 배치 및 해당 시설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용 출입구 및 전용엘리베이터 등 전용코어를 설치

※ 상봉7·9재정비축진구역에서 설치하는 공공·문화복지시설은 향후 구체적 건축계획 수립시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위치 및 면적에 대해 결정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변경)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원· 녹지시설	공 원	문화공원	상봉6·7·9재정비축진구역	28,586.5	감) 28,586.5	—	폐지

5) 교통계획 - 공람도서 참조

6) 경관계획 - 공람도서 참조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변경)

지구명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정비수법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상봉 재정비 축진 지구	변경	상봉6재정비축진구역	상봉동 84일대	98,342.1	감) 98,342.1	—	—	해제
	변경	상봉7재정비축진구역	상봉동 88일대	16,508.8	감) 1,518.8	14,990.0	전면개발	구역계 변경
	기정	상봉8재정비축진구역	상봉동 500일대	25,334.6	—	25,334.6	전면개발	준공
	기정	상봉9재정비축진구역	상봉동 83-1일대	28,526.6	—	28,526.6	전면개발	—

○ 구역별 계획(변경)

구역명	구역면적 (㎡)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최고높이	사업방식	비고
				기준	최대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14,990.0	주거, 업무 판매, 복지	60%이하	600	900	140m이하	도시환경 정비사업	기정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28,526.6	업무, 판매 주거, 문화	60%이하	700	738	175m이하	도시환경 정비사업	기정

※ 상봉8재정비촉진구역은 사업 완료로 준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구역별 계획에서 제외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05,597.9	-	505,597.9	-	-
촉진구역	소계 (4개 → 2개 구역)		168,712.1	감) 125,195.5	43,516.6	-	-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84 일대	98,342.1	감) 98,342.1	-	-	해제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88 일대	16,508.8	감) 1,518.8	14,990.0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500 일대	25,334.6	감) 25,334.6	-	-	존치관리 전환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83-1 일대	28,526.6	-	28,526.6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존치정비구역	소계 (2개 → 0개 구역)		15,262.6	감) 15,262.6	-	-	-
	상봉3존치정비구역	망우동 490-1 일대	8,991.1	감) 8,991.1	-	-	해제
	상봉4존치정비구역	망우동 489-1 일대	6,271.5	감) 6,271.5	-	-	해제
존치관리구역	소계 (19개 → 12개 구역)		188,624.6	증) 144,388.9	333,013.5	-	-
	상봉1존치관리구역	상봉동 100-15 일대	7,807.1	증) 2,436.5	10,243.6	개별건축사업	변경
	상봉2존치관리구역	상봉동 108 일대	11,768.4	증) 12,615.0	24,383.4	개별건축사업	변경
	상봉3존치관리구역	상봉동 101 일대	2,869.1	증) 25,248.2	28,117.3	개별건축사업	변경
	상봉4존치관리구역	상봉동 91-7 일대	3,055.1	증) 22,412.6	25,467.7	개별건축사업	변경
	상봉5존치관리구역	상봉동 81 일대	3,294.1	증) 29,655.7	32,949.8	개별건축사업	변경
	상봉6존치관리구역	상봉동 103 일대	31,781.2	증) 3,561.5	35,342.7	개별건축사업	변경
	상봉7존치관리구역	상봉동 87 일대	3,916.7	증) 26,578.3	30,495.0	개별건축사업	변경
	상봉8존치관리구역	상봉동 84 일대	8,558.8	증) 19,063.8	27,622.6	개별건축사업	변경
	상봉9존치관리구역	상봉동 50-1 일대	9,255.2	증) 25,654.9	34,910.1	개별건축사업	변경
	상봉10존치관리구역	망우동 479 일대	3,903.7	증) 45,251.9	49,155.6	개별건축사업	변경
	상봉11존치관리구역	망우동 490-1 일대	13,397.7	감) 4,406.6	8,991.1	개별건축사업	변경
	상봉12존치관리구역	상봉동 500 일대	-	증) 25,334.6	25,334.6	개별건축사업	신규
	상봉13존치관리구역	상봉동 101 일대	2,735.6	감) 2,735.6	-	-	폐지
	상봉14존치관리구역	상봉동 107-6 일대	3,974.6	감) 3,974.6	-	-	폐지
	상봉15존치관리구역	상봉동 108 일대	11,832.7	감) 11,832.7	-	-	폐지
	상봉16존치관리구역	상봉동 101 일대	29,609.9	감) 29,609.9	-	-	폐지
	상봉17존치관리구역	상봉동 91-1 일대	3,031.9	감) 3,031.9	-	-	폐지
	상봉18존치관리구역	상봉동 90 일대	6,698.3	감) 6,698.3	-	-	폐지
	상봉19존치관리구역	망우동 564-10 일대	3,705.4	감) 3,705.4	-	-	폐지
	상봉20존치관리구역	상봉동 50-1 일대	27,429.1	감) 27,429.1	-	-	폐지
기타존치지역	도로 등	-	132,998.6	감) 3,930.8	129,067.8	-	-

※ 존치관리구역의 통합적 관리 등을 위해 일부구역 폐지 및 인접 구역과 통폐합(존치관리구역 재편)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변경계획(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구역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구분	구역명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기준	최대		
촉진구역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주거, 문화, 판매	60이하	360	400	120m/140m이하	해제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주거, 업무, 판매, 복지	60이하	600	900	140m이하	기정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주거, 판매, 업무	60이하	510	600	185m이하	기정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주거, 업무, 판매, 문화	60이하	700	738	175m이하	기정

12) 기반시설 비용분담 계획(변경)

○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기정)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	기반시설면적(㎡)									
			계획기반시설 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 매입 시설 ④	순부담 면적 (①-②- ③-④)	순 부담률 (%)
			계	도로	공원	광장	기타					
민간 부분 (촉진계획)	계	183,974.7	50,844.3	17,812.8	26,211.2	1,994.4	4,825.9	11,389.2	8,649.6	-	30,796.5	16.7
	소계	168,712.1	48,588.2	17,509.3	26,211.2	1,994.4	2,873.3	11,389.2	8,649.6	-	28,540.4	16.9
	상봉 6 재정비촉진구역	98,342.1	30,114.3	10,749.2	19,365.1	-	-	9,477.8	6,654.3	-	13,982.2	14.2
	상봉 7 재정비촉진구역	16,508.8	5,369.1	74.0	3,990.8	-	1,304.3	1,911.4	1,505.4	-	1,952.3	11.8
	상봉 8 재정비촉진구역	25,334.6	7,276.7	5,282.3	-	1,994.4	-	-	489.9	-	6,777.8	26.7
	상봉 9 재정비촉진구역	28,526.6	5,828.1	1,403.8	2,855.3	-	1,569.0	-	-	-	5,828.1	20.4
	소계	15,262.6	2,256.1	303.5	-	-	1,952.6	-	-	-	2,256.1	14.8
	상봉 3 존치정비구역	8,991.1	1,331.3	208.9	-	-	1,122.4	-	-	-	1,331.3	14.8
	상봉 4 존치정비구역	6,271.5	924.8	94.6	-	-	830.2	-	-	-	924.8	14.7
민간 부분 (기부채납)	계	32,585.6	462.5	462.5	-	-	-	-	-	-	462.5	-
	상봉 16 존치관리구역	25,174.8	143.8	143.8	-	-	-	-	-	-	143.8	-
	상봉 17 존치관리구역	3,705.4	264.0	264.0	-	-	-	-	-	-	264.0	-
	상봉 19 존치관리구역	3,705.4	54.7	54.7	-	-	-	-	-	-	54.7	-
공공 부분	계	45,546.7	1,389.6	1,389.6	-	-	-	-	-	-	1,389.6	-
	상봉 2 존치관리구역	6,276.7	548.6	548.6	-	-	-	-	-	-	548.6	-
	상봉 3 존치관리구역	2,869.1	194.0	194.0	-	-	-	-	-	-	194.0	-
	상봉 6 존치관리구역	32,484.2	299.0	299.0	-	-	-	-	-	-	299.0	-
	상봉 7 존치관리구역	3,916.7	348.0	348.0	-	-	-	-	-	-	348.0	-

○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변경)

구 분		구 역 명	구역 면적 (㎡)	기 반 시 설 면 적 (㎡)									
				계획기반시설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 매입설 ④	순부담 면적 (①-②- ③-④)	순 부담률 (%)
				계	도 로	광 장	자동차 정류장	공공 청사 등					
민간 부문 (촉진계획)	소 계		43,516.6	7,604.4	6,035.4	-	1,569.0	- (건축시설) 4,645.6	783.7	1,127.4	-	10,338.9	23.8
	촉진 구역	상봉 7 재정비촉진구역	14,990.0	1,776.3	1,776.3	-	-	- (건축시설) 3,132.8	783.7	1,127.4	-	2,998.0	20.0
		상봉 9 재정비촉진구역	28,526.6	5,828.1	4,259.1	-	1,569.0	- (건축시설) 1,512.8	-	-	-	7,340.9	25.7
민간 부문 (기부채납)	소 계		138,083.3	491.1	491.1	-	-	-	-	-	-	491.1	-
	존치 관리 구역	상봉 3 존치관리구역	28,117.3	143.8	143.8	-	-	-	-	-	-	143.8	-
		상봉 4 존치관리구역	25,467.7	264.0	264.0	-	-	-	-	-	-	264.0	-
		상봉 6 존치관리구역	35,342.7	28.6	28.6	-	-	-	-	-	-	28.6	-
		상봉 10 존치관리구역	49,155.6	54.7	54.7	-	-	-	-	-	-	54.7	-
공공 부문	계		131,956.5	1,389.6	1,389.6	-	-	-	-	-	-	1,389.6	-
	존치 관리 구역	상봉 2 존치관리구역	24,383.4	548.6	548.6	-	-	-	-	-	-	548.6	-
		상봉 4 존치관리구역	25,467.7	194.0	194.0	-	-	-	-	-	-	194.0	-
		상봉 5 존치관리구역	32,949.8	299.0	299.0	-	-	-	-	-	-	299.0	-
		상봉 10 존치관리구역	49,155.6	348.0	348.0	-	-	-	-	-	-	348.0	-

※ 상기 내역 중 공공청사등 항목“()” 건축시설 면적은 시설 기부채납할 건축물 바닥면적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한 면적과 대지지분을 합한 면적임

※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의 건축시설 면적(1,512.8㎡)은 여객자동차터미널 건축물 855.8㎡와 공공청사 건축물 657㎡임
- 공공청사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순부담 면적은 용적률 산정시 제외 (높이 완화로 적용)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 공급규모별 임대주택 확보계획(변경) >

구 분	구 역 명	계 획 세대수	일반 주택 (세대)	임대주택 공급계획(세대)					비 고
				소 계	전용면적 40~50㎡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용면적 85㎡초과	
합 계 (비 율)		1,358	1,199	159 (100.0%)	－	111 (69.8%)	39 (24.5%)	9 (5.7%)	
촉진 구역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511	423	88	－	40	39	9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847	776	71	－	71	－	－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사업기간			해 당 구 역	비 고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2007	2009년	2013년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2단계	기정	2011년	2015년	2016년	상봉6·7재정비촉진구역
	변경	2011년	2018년	2022년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3단계	기정	2013년	2017년	2017년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상봉3·4존치정비구역
	변경	2013년	2018년	2023년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 단계별 추진계획은 각 단계의 총량의 범위 및 주민들의 사업 추진의지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

15) 기타(광고물 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신재생에너지 적용계획, 특성화 계획, 여성친화적 건설계획, 친환경 건축물계획) : 변경없음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가) 상봉6재정비촉진구역 : 구역해제
- 나) 상봉7·9재정비촉진구역 : 공람도서 참조
- 다)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 사업완료에 따른 존치관리구역 전환

17)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가) 상봉3·4존치정비구역 : 존치관리구역 전환
- 나)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가구 번호	지 번	계 획 내 용	비 고
A	상봉동 100-15 일원	100-21,-24~29,-56/ 100-15/ 100-17 : 각각 획지선 지정	
B	상봉동 99-7일원	100-2~4,-40/ 99-11, 100, 160-6/ 99-7,-9,-10/ 100-7,-47 : 각각 획지선 지정	
C	상봉동 115-1 일원	115-5,-6/ 115-9~11/ 115-63,-64 : 각각 공동개발 규제	
D	상봉동 113일원	113-5,-6/ 113-11,-12/ 113-28,-41/ 113-8,-31 : 각각 획지선 지정	
E	상봉동 92일원	92, 92-3 : 공동개발 규제	
F	상봉동 89일원	89-32,-33 : 공동개발 규제	
G	상봉동 89-3일원	89-16,-17 : 공동개발 규제	
H	망우동 563일원	563-12,-14,-15,-16,-17,-18,-19/ 563-2,-5,-6,-7,-8,-9,-11/ 563, 563-1, 568/ 563-3,-4,-20,-22 : 각각 공동개발 규제	
I	망우동 506-1 일원	506-1,-2,-24,-25,-26 : 획지선 지정	
J	망우동 506-3 일원	506-14 : 획지선 지정 506-6,-7/ 506-11,-12,-21,-22,-30 : 각각 공동개발 규제	
K	망우동	508-2,-3,-4,-5/ 508-11,-12,-14,-18/ 508-27,-28,-65/ 508-37,-67/	

가구 번호	지 번	계 획 내 용	비 고
	508-1 일원	508-47,-51/ 508-56,-57 : 각각 공동개발 규제 508-15,-16 : 공동개발 규제	
L	상봉동 101	101 : 획지선 지정	
M	상봉동 108 일원	108,108-19/ 108-3,-4/ 108-2,-15,-16,-17,-20,-25,-26,-27,-40,-41 : 각각 공동개발 규제	
N	상봉동 101-2 일원	102-4,-82/ 102-86,-87,-88/ 102-97,-98,-99,-105,-106,-107/ 102-102,-103 : 각각 획지선 지정 101-17,-39/ 101-19,-40,-41,-42/ 101-46,-47/ 102-57,-126/ 102-53,-115/ 10-37,-38,-39,-40,-41,-51/ 102-68,-70,-71,-72 : 각각 공동개발 규제	
O	상봉동 91-1일원	91-4,-7 : 공동개발 규제	
P	상봉동 90 일원	90-1,-22,-23/ 90-21,-27/ 90-29,-30,-31/ 90-64,-65 : 각각 공동개발 규제	
Q	망우동 564일원	564, 564-2/ 564-5,-6/ 564-7,-8,-10,-11 : 각각 공동개발 규제	
R	상봉동 49일원	상봉동 49-3~-6/ 49-8,-10 : 각각 공동개발 규제 망우동 489-1,-2,-9/ 489-26,-20일부(대지분할선 참조)/ 489-28,-35일부(대지분할선 참조) : 각각 획지선 지정	
S	상봉동 107일원	107-7~-10,-13 : 획지선 지정	
T	상봉동 103일원	103,103-27/ 104-2,-3/ 104-21,-22/ 104-32,-34 : 각각 획지선 지정	
U	상봉동 87일원	87-6,-12/ 105-7,-8/ 105-97~-100/ 106-8,-9/ 106-14,-35/ 106-15,-33,-34/ 106-22,-23 : 각각 획지선 지정 105-49,-52/ 106, 106-36/ 106-27,-28 : 각각 공동개발 규제	
V	상봉동 84일원	84-5,-6/ 85-18,-66,-67/ 86-37,-38/ 86-60,-61 : 각각 획지선 지정	
W	망우동 490일원	490-5,-6,-32/ 490-13,-15,-18일부(대지분할선 참조) : 각각 획지선 지정	
X	상봉동 500일원	500 획지선 지정	
Y	망우동 479일원	479/ 495 각각 획지선 지정	
Z	상봉동 81-5일원	81-5/ 501 각각 획지선 지정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 및 공동개발 권장사항은 공람도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공람도서 참조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람도서 참조
- 기준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공람도서 참조

1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 지	특별계획구역 2	망우동 479 일대 (舊 아주레미콘 부지)	8,223.0	감) 8,223.0	—	존치관리10구역으로 관리
폐 지	특별계획구역 3	상봉동 79-1 일대 (舊 동서울자동차공업사 부지)	8,759.0	감) 8,759.0	—	존치관리 5구역으로 관리
폐 지	특별계획구역 4	상봉동 81-5 일대 (舊 강원산업콘크리트공장 부지)	10,920.0	감) 10,920.0	—	존치관리 5구역으로 관리
기 정	특별계획구역 5	상봉동 81-1 일대	11,677.0	—	11,677.0	코스트코(상봉점) 부지
폐 지	특별계획구역 7	상봉동 107-6	3,974.6	감) 3,974.6	—	존치관리 6구역으로 관리
폐 지	특별계획구역 10	망우동 490-1 일대	8,991.1	감) 8,991.1	—	존치관리 9구역으로 관리
폐 지	특별계획구역 11	망우동 489-1 일대	6,271.5	감) 6,271.5	—	존치관리11구역으로 관리
기 정	특별계획가능구역 12	상봉동 50-1 일대	10,576.6	—	10,576.6	존치관리11구역 일부지역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5	35~4 1	간선도로	8,100 (1,210)	중랑교	망우동 서울시계	일반 도로	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12.26)	망우로
기정	대로	2	88	25~3 2	-	2,020	망우동 489-2	신내동 674-1	-	서울시고시 제104호 (1994.4.7)	신내길
기정	대로	3	-	25~3 0	보조간선	(380)	상봉동 160-7	상봉동 160-21	일반 도로	건교부고시 제935호 (1964.6.25)	면목동길
기정	대로	3	-	25~2 8	보조간선	(675)	상봉동 160-18	상봉동 534-21	일반 도로	건교부고시 제2493호 (1966.6.21)	봉우재길
변경	대로	3	-	25	보조간선	(675)	상봉동 160-18	상봉동 534-21	일반 도로	건교부고시 제2493호 (1966.6.21)	봉우재길
기정	대로	3	-	25~2 8	보조간선	(380)	상봉동 534-65	상봉동 534-21	일반 도로	건교부고시 제2493호 (1966.6.21)	상봉동길
기정	중로	1	185	20~2 6	-	620	상봉동 99	상봉동 301	-	서울시고시 제949호 (1988.12.12)	상봉중앙길
기정	소로	2	-	8	집산도로	370	상봉동 402-35	상봉동 90-48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425호 (1984.7.31)	면목천길
변경	중로	1	-	20	집산도로	732	상봉동 402-35	상봉동 399-5	일반 도로	-	폭원확폭 도로연장
기정	중로	2	-	15~1 9	집산도로	139	상봉동 83-7	상봉동 402-4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요람2길
변경	중로	2	-	15	집산도로	139	상봉동 83-7	상봉동 402-4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도로중심선 위치 조정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150	상봉2동 81-2	상봉2동 8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34호 (2000.8.4)	상봉여울길
기정	중로	2	-	16	집산도로	40	상봉동 99	상봉동 184-2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157호 (2008.5.8)	
기정	중로	2	2	16	집산도로	203	망우동 565	망우동 495-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95호 (2004.9.20)	맞춤씨길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119	상봉2동 79-6	상봉2동 399-7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35호 (2000.8.16)	
기정	중로	2	-	20	집산도로	405	상봉동 91-4	상봉동 85-4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상봉중앙길
변경	중로	2	-	16	집산도로	207	상봉동 88-93	상봉동 85-41	일반 도로	-	폭원 및 연장 축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	15	집산도로	140	상봉동 88	상봉동 88-11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2	13	집산도로	292	망우동 534-37	망우동 534-64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95호 (2004.9.20)	새한길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9	망우동 534-62	망우동 534-59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95호 (2004.9.20)	맞춤씨길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370	상봉동 186-7	상봉동 80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157호 (2008.5.8)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11	상봉동 73-14	상봉동 72-7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157호 (2008.5.8)	
기정	소로	1	-	12	국지도로	88	상봉동 107-24	상봉동 107-60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달개비1길
기정	소로	2	-	8	집산도로	41	망우동 534-65	망우동 564-1	일반 도로	-	일부구간 폭원변경
기정	소로	3	-	4	특수도로	53	상봉동 106-3	상봉동 91-1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폐지	소로	1	-	10	집산도로	46	망우동 490-1	망우동 490-20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우림길

※ ()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 면적, 연장, 폭원, 시·종점

(2) 공원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상봉 중앙공원	문화공원	상봉동 399-4 일대	28,586.5	감) 28,586.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2호 (2009.8.13)	

(3) 공공공지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공공공지	상봉동 81-8 일대	1,099.0	-	1,099.0	서울특별시고시 제 235호 (2000년 8월 16일)	소공원
변경	③	공공공지	상봉동 399-7일대	1,183.0	감) 123.0	1,060.0	서울특별시고시 제 235호 (2000년 8월 16일)	소공원
폐지	⑥	공공공지	망우동 490-1일대	1,122.4	감) 1,122.4	-	서울특별시고시 제 312호 (2009년 8월 13일)	
폐지	⑦	공공공지	망우동 489-1일대	830.2	감) 830.2	-	서울특별시고시 제 312호 (2009년 8월 13일)	

(4) 광장 (변경없음)

- 기정 계획내용 중 망우역 광장 면적표기 오류를 금회 정정 : 공람도서 참조

(5) 도시철도 (변경없음)

(6) 철도 (변경없음)

(7) 문화시설 (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페이지	①	문화시설	문화시설	상봉동 88-77번지 일 대	1,304.3	감)1,304.3	-	서울특별시고시 제312호 (2009년 8월 13일)	

(8)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9) 공공청사(변경없음)

(10)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바.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도서에 명시

4.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공청회, 관계행정(부서)기관 협의,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고시되므로 제반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관련서류 : 중랑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및 열람 가능

- 공람도서는 평일 09:00~18:00까지 열람 가능 합니다.

6.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중랑구청 도시개발과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공람의견서 서식 : 별첨양식 참조

- 우편주소 : (우 02043)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신내동) 중랑구청 도시개발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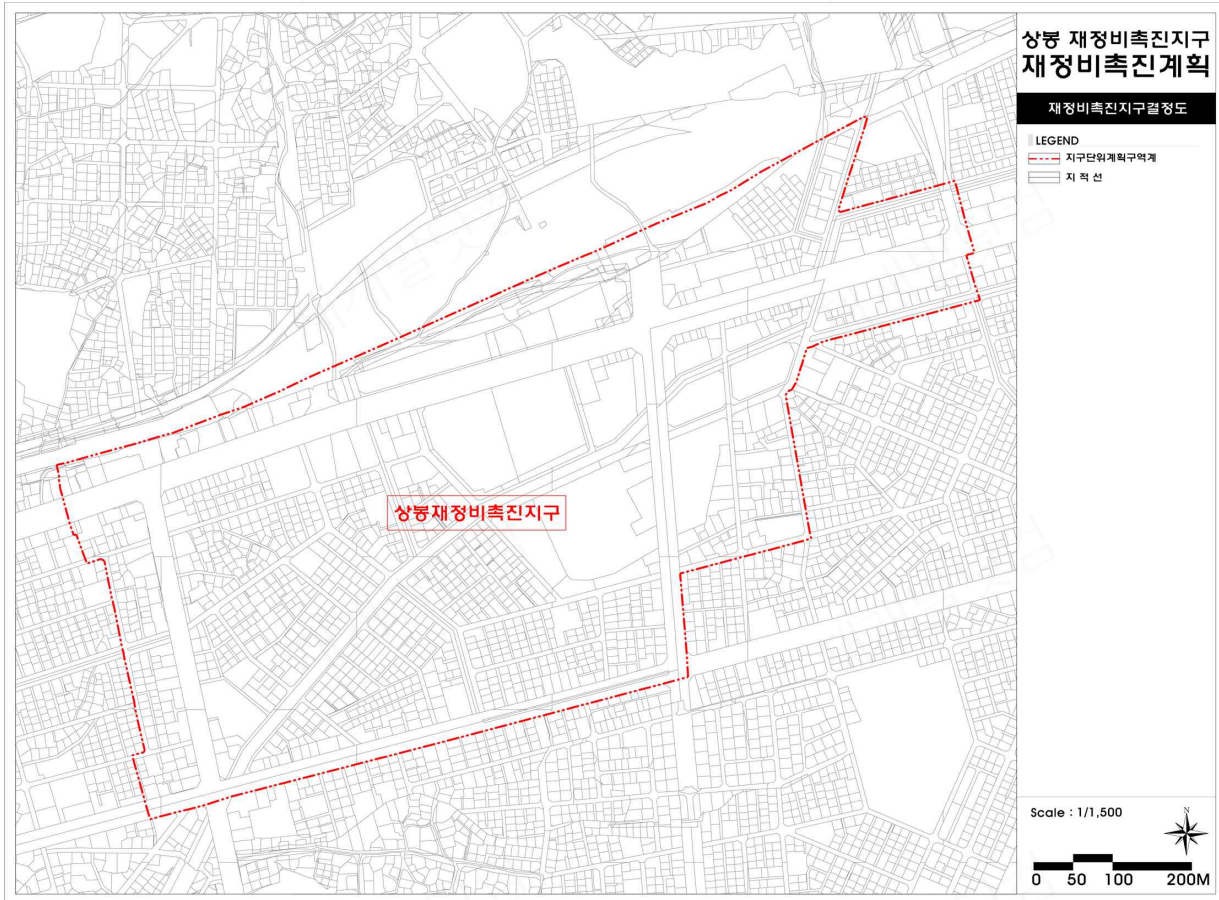
※ 우편에 의한 공람의견서는 2016.8.31. 도착분까지 의견서로 반영합니다.

7. 문 의 처 : 중랑구청 도시개발과(☎ 02-2094-2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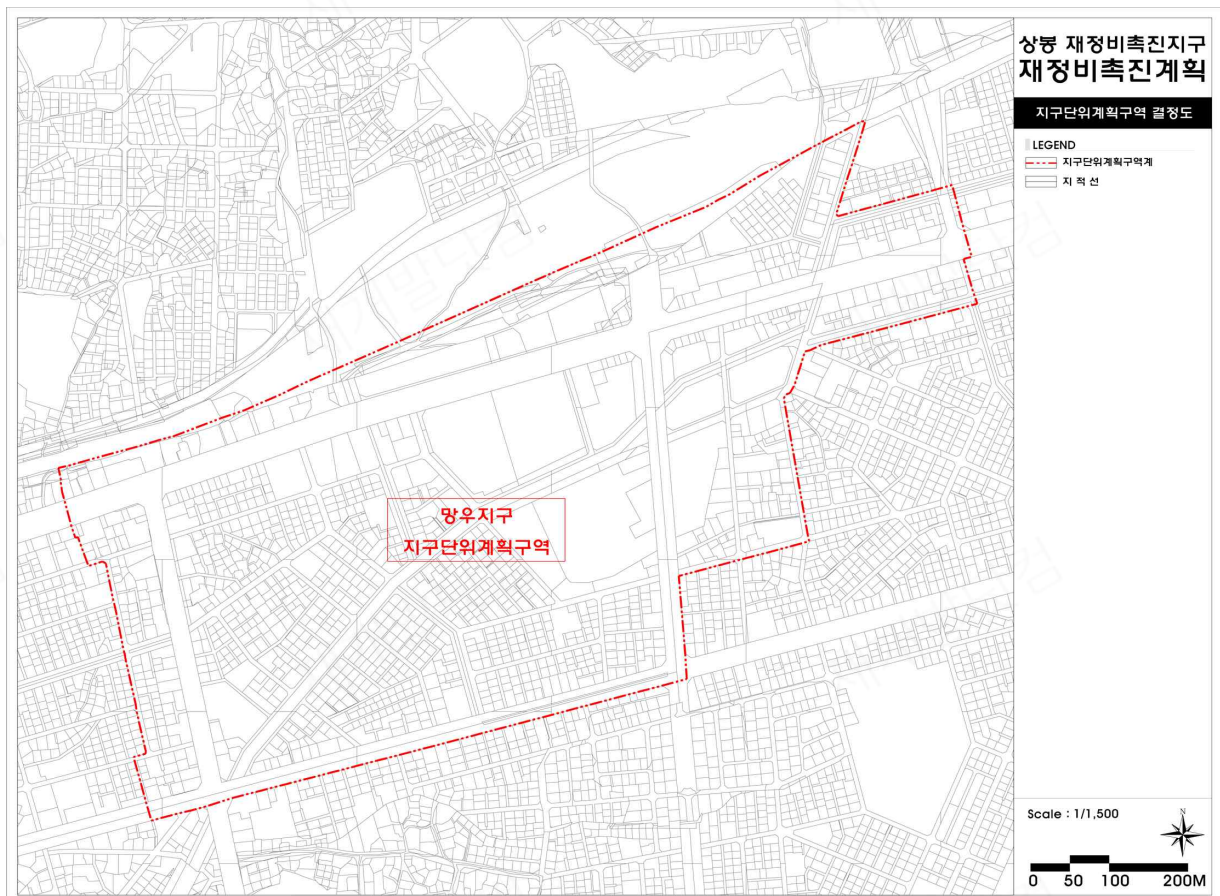
첨부 : 1. 관계도면 1부.

2. 공람의견서(양식)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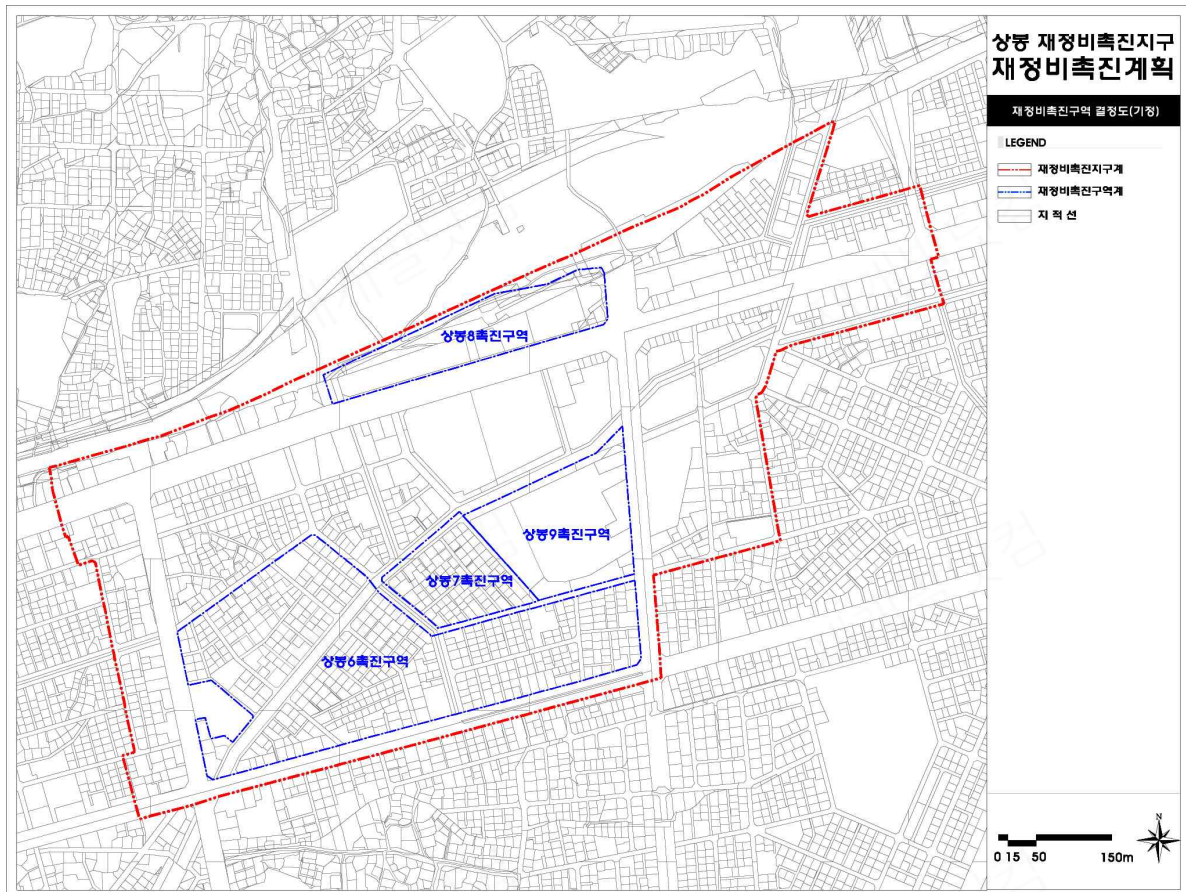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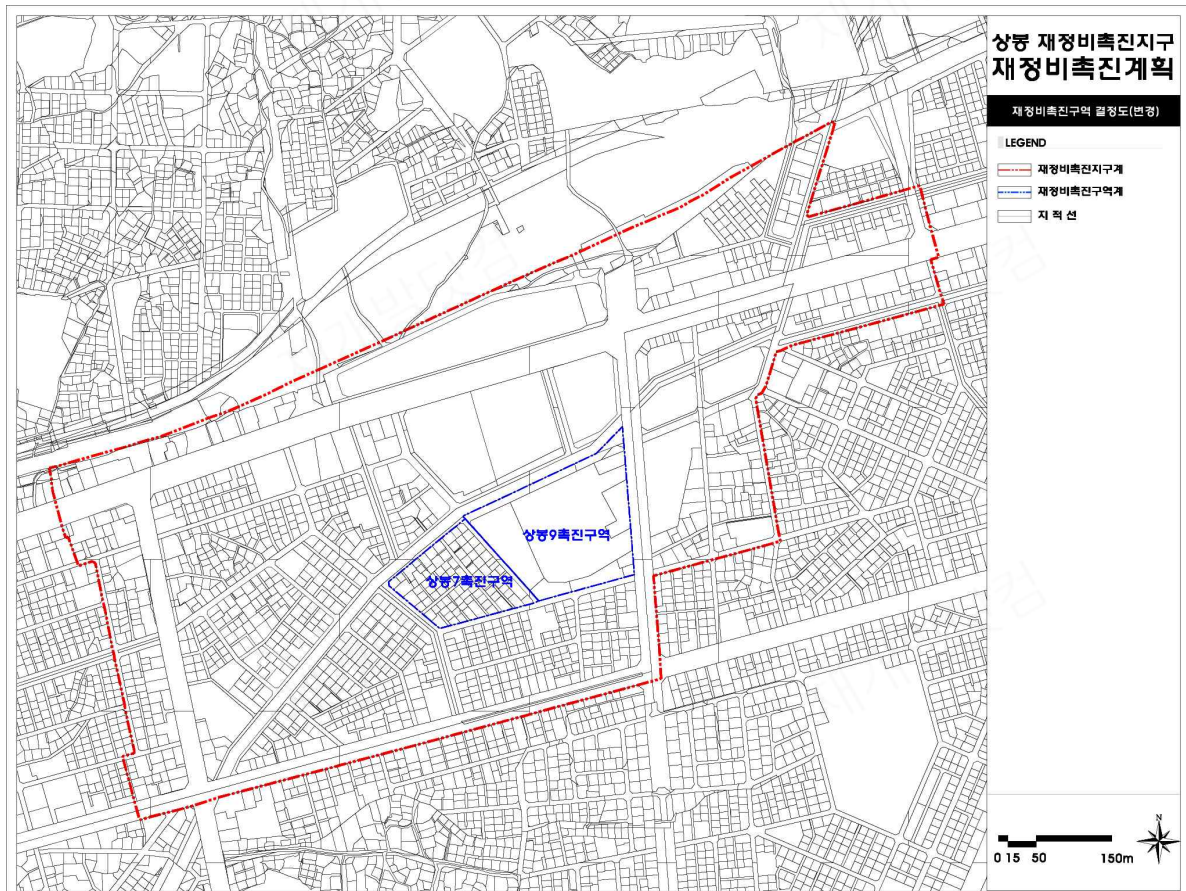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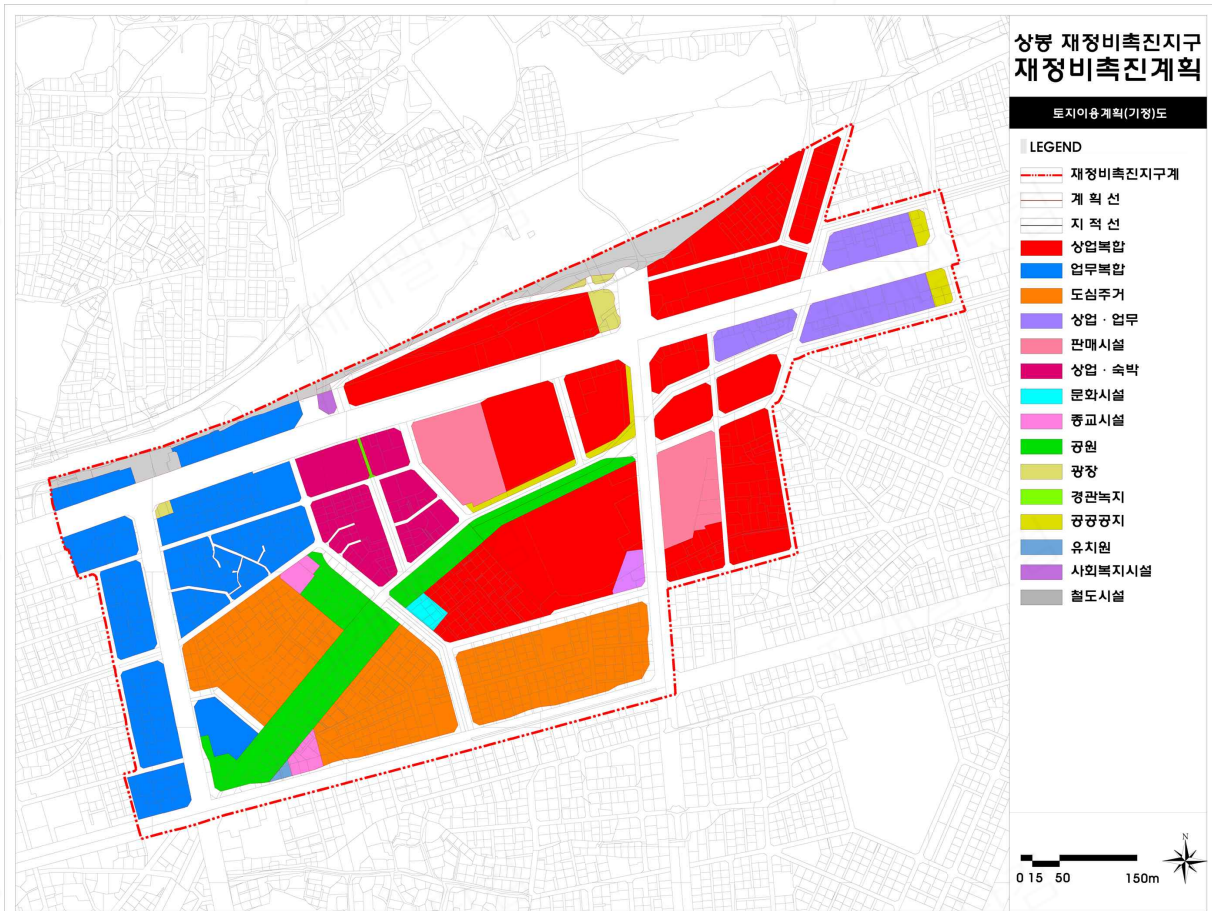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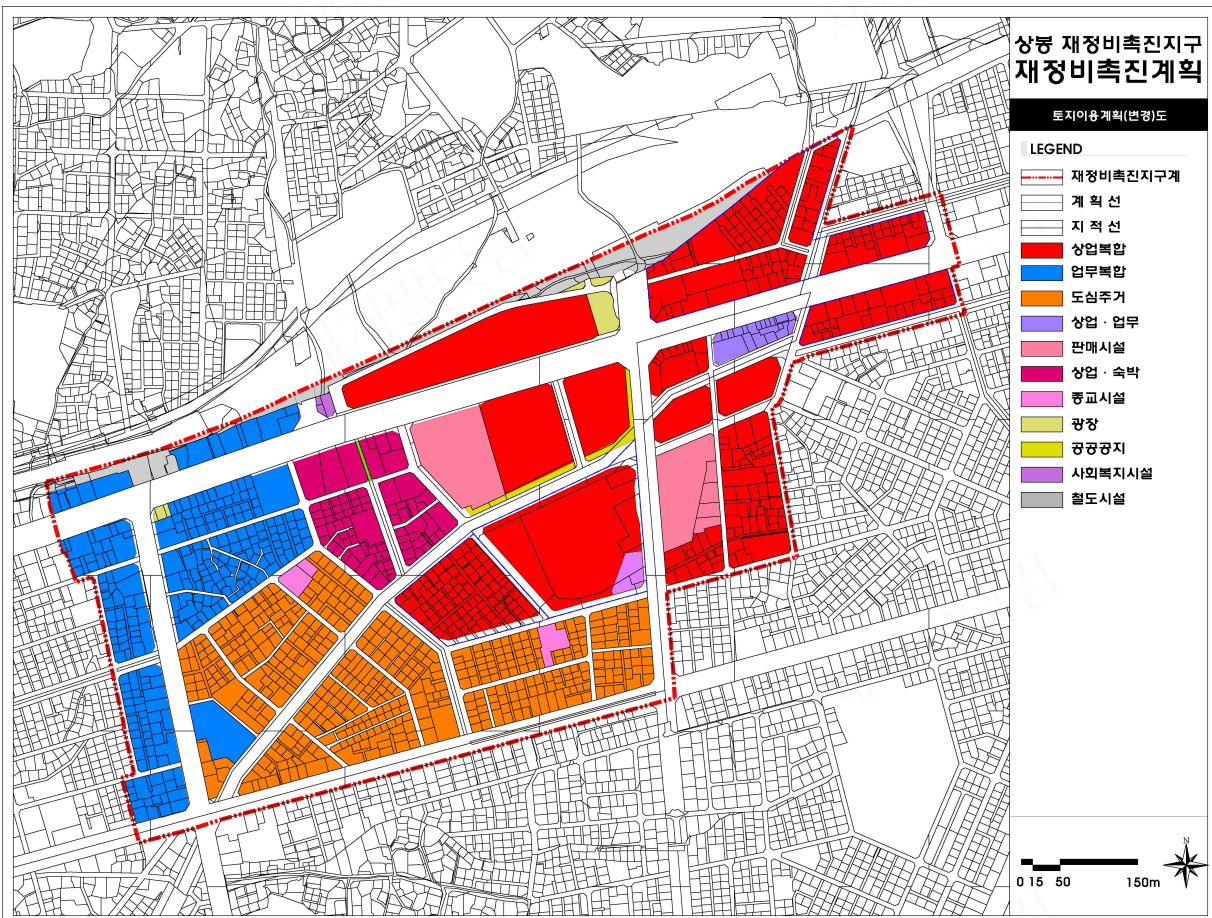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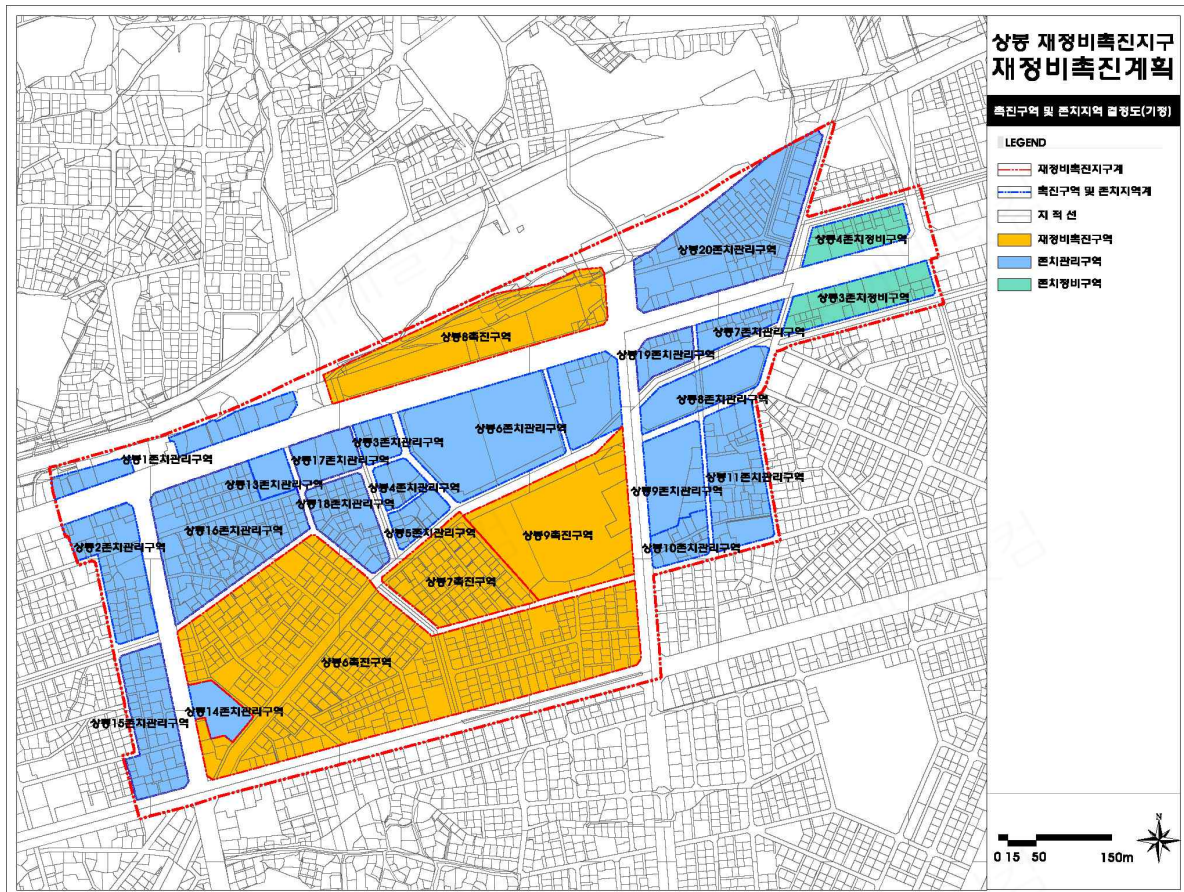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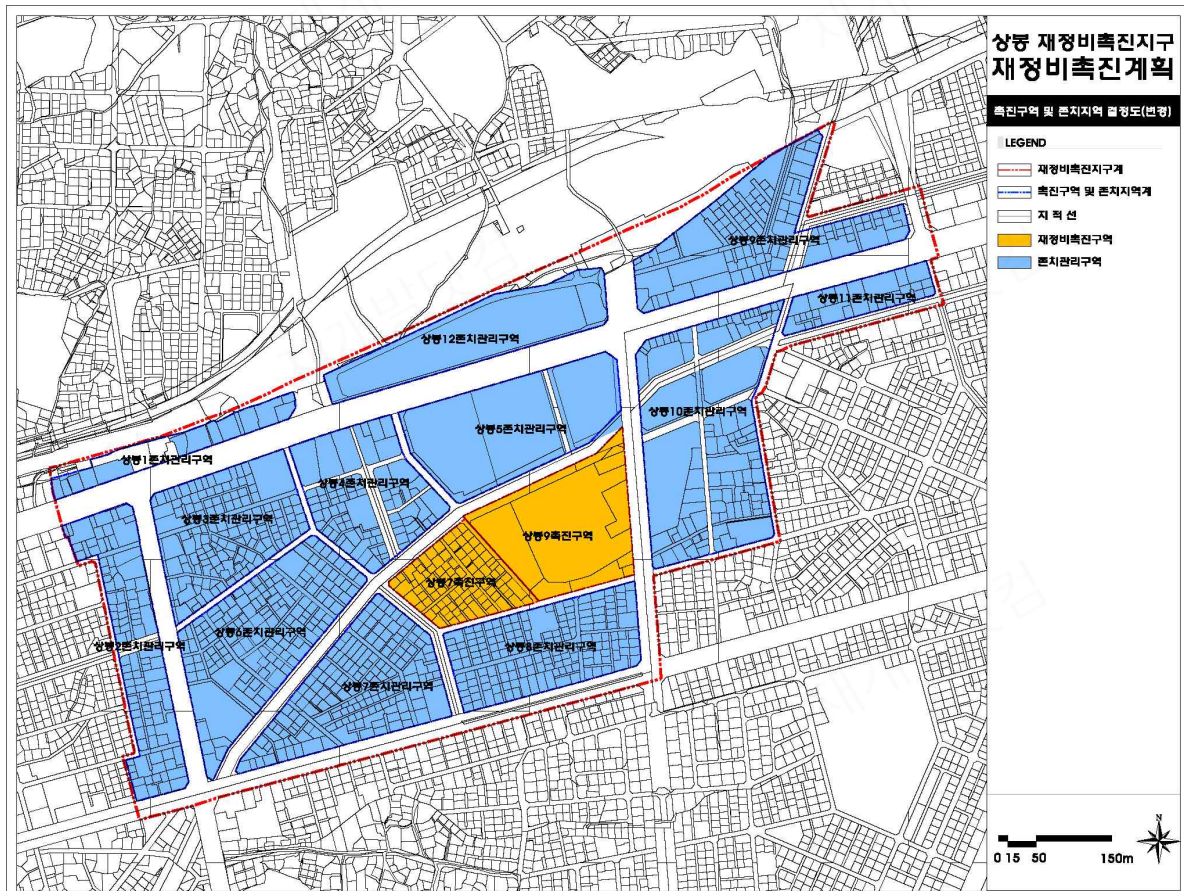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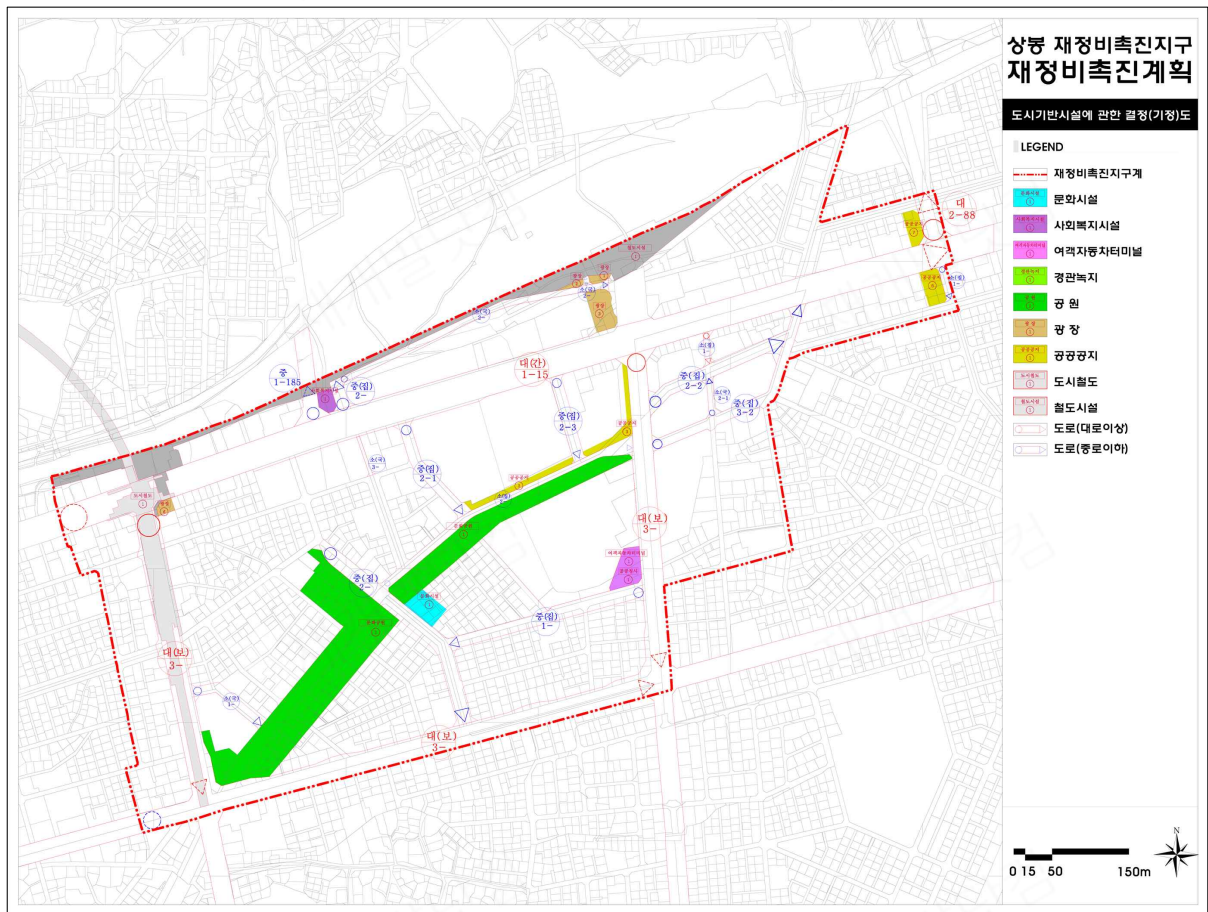
○ 존치정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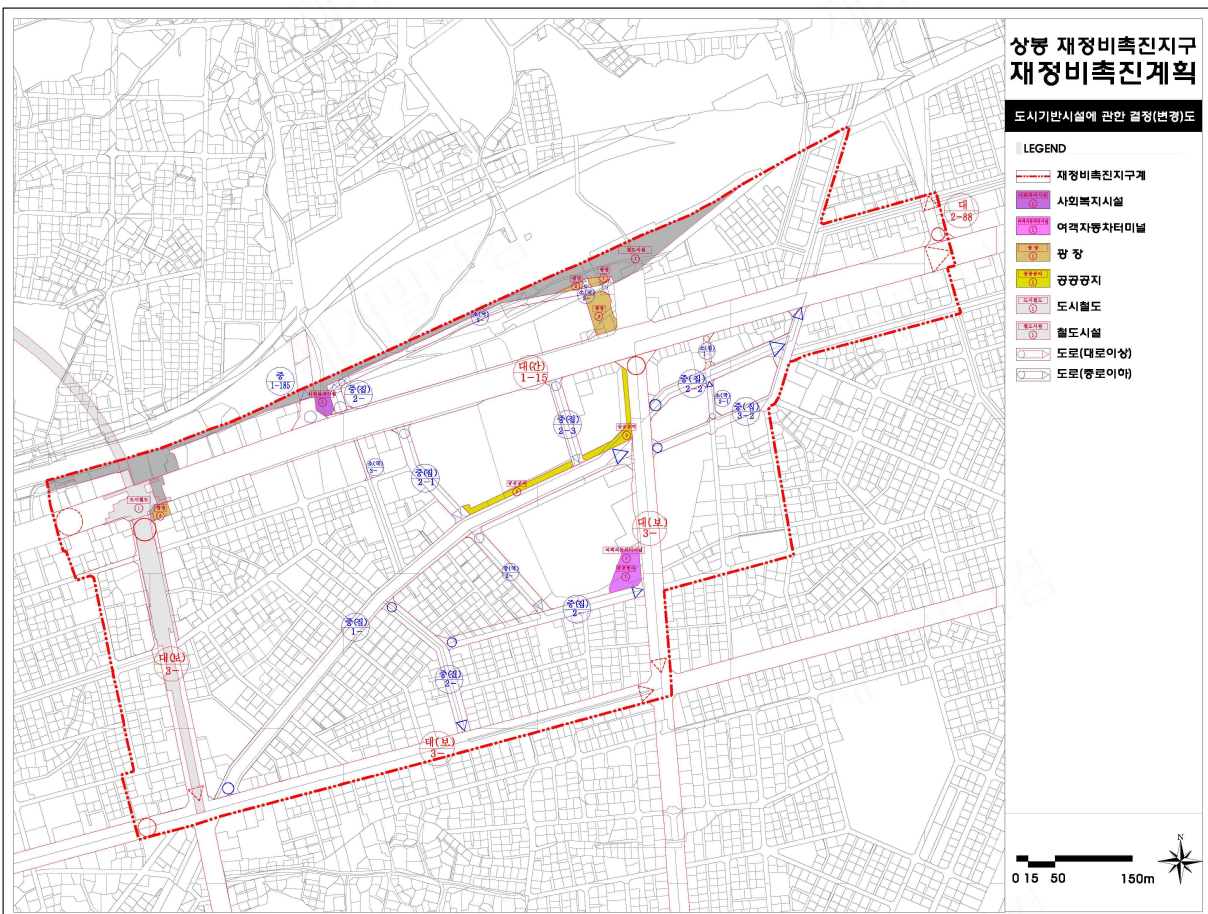
○ 존치정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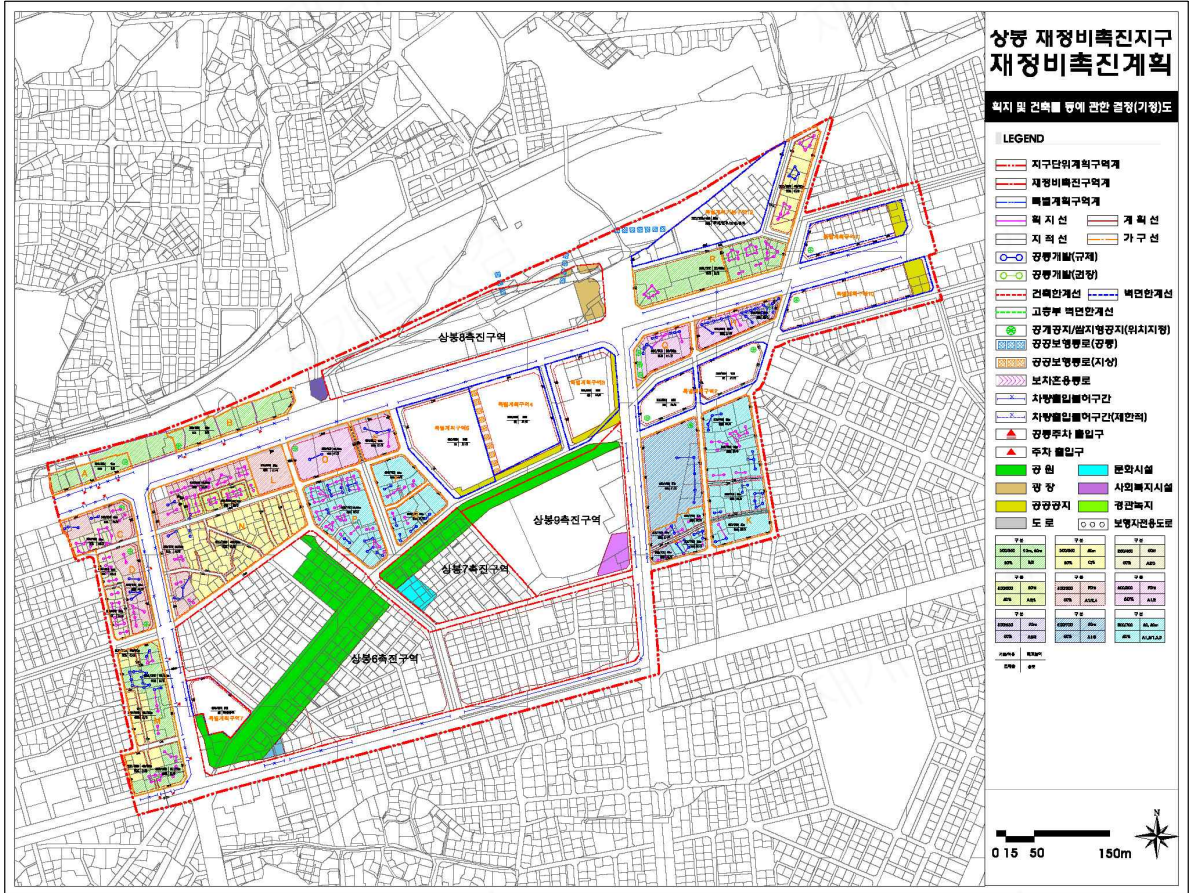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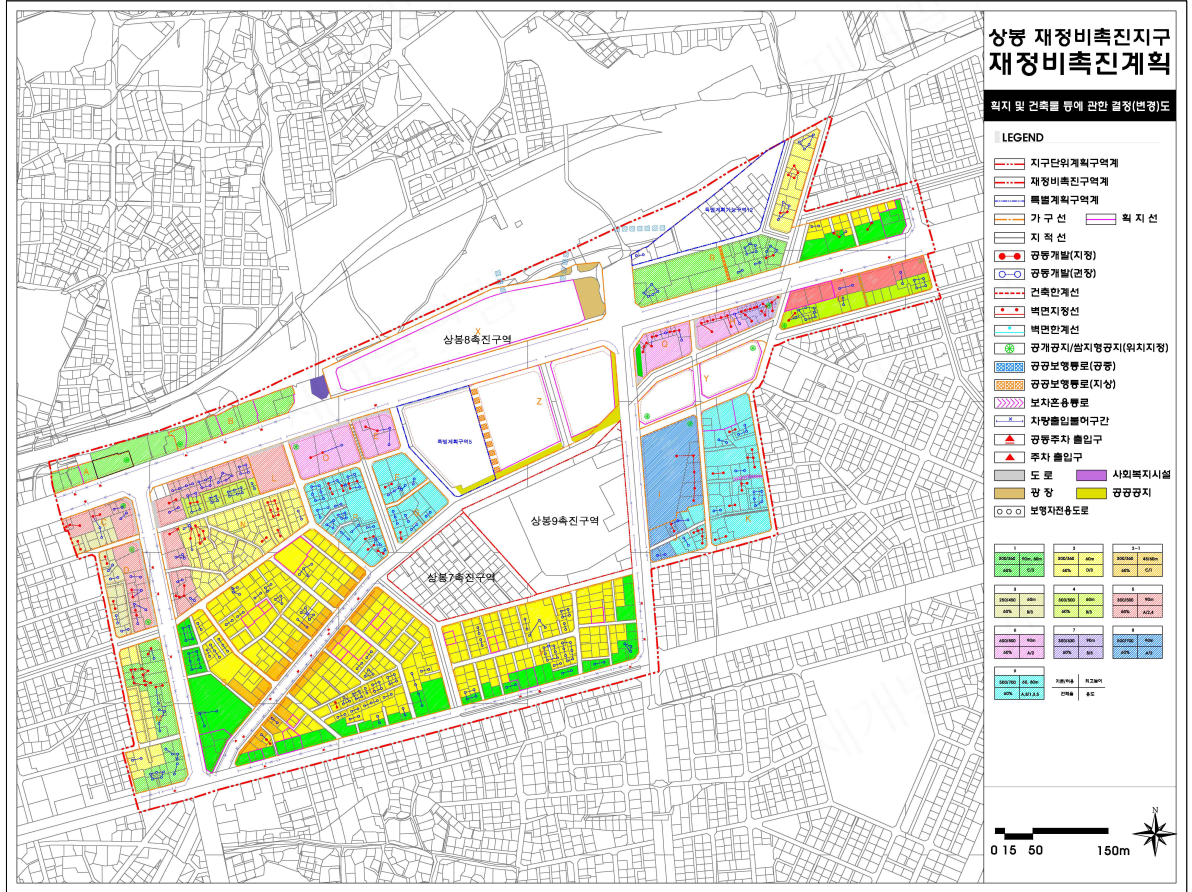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별첨 - 공람의견서>

공 람 의 견 서

공 고 명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공람기간 (제출기간)	2016.8.11.~2016.8.26.			
소 유 물 건	건 물			
	토 지			
의 견 제출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공 램 의 견

2016. 8. .

중랑구청장 귀하